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96
----------	-------

발의연월일 : 2025. 9. 16.

발 의 자 : 김선민 · 김준형 · 신장식
서왕진 · 황운하 · 전진숙
차규근 · 장종태 · 정춘생
이해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만 명시하고 대통령령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으나, 처방전 수령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 의료취약지 환자의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하여 비대면진료를 현재까지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기준 및 관련 제재규정 등이 미비하여 비대면진료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편의성을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가족 이외의 처방전 대리수령자로 장애인 거주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근무자를 포함하여 대리수령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대면진료의 내용, 실시 요건 및 의료인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그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2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진찰”을 “진찰(제34조의2에 따른 비대면진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조의2에서 같다)”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로, “이 조에서”를 “이 조 및 제34조의2에서”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의 제목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을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협진”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원격의료를”을 각각 “비대면협진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원격의료”를 “비대면협진”으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이 법에서 “비대면진료”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對面)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대면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는 환자
2. 섬·벽지(僻地)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③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 및 적정 처방일수
2. 명확한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화상통신을 통하여야 하는 비대면 진료의 범위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 의사회(이하 이 조에서 “의사회등”이라 한다) 및 각 질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⑪ 의사회등의 장은 의료인 또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또는 이 법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의 개발 및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⑬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중개) ①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제18조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정성 및 우수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34조의4(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

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인의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2. 환자·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③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제64조제1항”을 “제64조제1항·제4항”으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6부터 제1호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45조의2제1항”을 “제34조의4제3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45조의2제3항”을 “제34조의4제4항 또는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자

1의6.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1의7.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의8.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
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7조의2(처방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rows of horizontal dashed lines, each row consisting of three parallel dashes. These lines are designed to help children learn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by tracing or copying letters onto them. The entire page is white, providing a clear background for the practice lines.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처방전)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인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생략)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의사 및 치과의사는 제18조에
 따른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
 라 의약품을 자신이 직접 조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의약품정보”라 한
 다)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
른 정신요양시설-----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①

----- . 이 경
우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
료를 하는 의사 및 치과의사는
「약사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

1. ~ 3. (생략)

②·③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
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
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
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
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
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
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
와 같은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
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비대면협진) ① -----

----비대면협진(이하 “비대면
협진”라 한다)을-----.

② 비대면협진을-----

-----.

③ 비대면협진을-----

-----.

④ -----비대면협진--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4조의2(비대면진료) ① 이 법에서 “비대면진료”란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유·무선,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진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속적 관찰
2. 상담·교육
3. 진단 및 처방

②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때 대면(對面)하여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다.

1. 해당 의료인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병(傷病)으로 대면하여 진료한 기록이 있는 환자

2. 섬·벽지(僻地)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 등으로서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

4.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에 의한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

③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대면진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과 장비

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의료인은 비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의 한계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3. 의료인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⑧ 의료인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는 의료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의 종류 및 적정 처방일수

2. 명확한 진단을 위하여 반드시 화상통신을 통하여야 하는

비대면진료의 범위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이하 이 조에서 “의사회등”이라 한다) 및 각 질 환별 전문학회의 의견을 참고 하여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 준지침(이하 “비대면진료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제34조의3제3항에 따 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⑪ 의사회등의 장은 의료인 또 는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 대면진료 중개업자가 비대면진 료 표준지침 또는 이 법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하여 정한 규 정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의 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관련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 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⑫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비대면진료에

<신 설>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의 개발 및 비대면진료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⑬ 그 밖에 비대면진료의 실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비대면진료 중개) ①

제34조의2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비대면진료 요청의 확인, 비대면진료의 실시,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전달 등을 위하여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 이하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신 설>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 되어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는 자(이하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라 한다)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매체가 제공하는 기능의 적정성 및 우수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할 수 있다.

제34조의4(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인의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적 판단에 개입하는 행위
2.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위

②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약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 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특정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약국, 약국 개설자·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게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를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등으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2. 환자·환자보호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의료기관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의료기관등의 명칭·소재지 등을 중

	<u>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u> ③ <u>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한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이용자 수, 진료과목 등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④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u>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u>제34조제2항</u> ,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 ----- ----- ----- ----- ----- ----<u>제34조제2항, 제3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u>----- -----

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신 설>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designed for handwriting practice. It features ten identical horizontal rows of dashed lines, evenly spaced from top to bottom. Each row consists of a single continuous line of small dashes,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 margins are consistent on all sides, and there is no additional text or imagery on the page.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제공·운영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4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

	<u>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u>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가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u>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u>제64조제1항·제4항</u>----- ----- ----- -----.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u><신설></u>	제92조(과태료)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한</u>

<u>1의2. ~ 1의4. (생략)</u> <u><신설></u> <u><신설></u> <u><신설></u> 2. ~ 5.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u>제4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u> 3. <u>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자</u> <u>1의3. ~ 1의5. (현행 제1호의2 부터 제1호의4까지와 같음)</u> <u>1의6. 제3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u> <u>1의7. 제34조의2제9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u> <u>1의8. 제3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를 제공·운영한 자</u> 2. ~ 5.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u>제34조의4제3항 또는 제45조의2제1항</u>----- ----- ----- 3. <u>제34조의4제4항 또는 제45조의2제3항</u>----- -----
---	---

4. (생 략) ③ · ④ (생 략)	----- 4.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